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

검토보고

I. 예산개요

- 1. 세입예산
- 해당 사항 없음.

2. 세출예산

-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19년 세출예산은 4억 2천 4백만원으로, 2018년도 당초예산 4억 4백만원 대비 4.9% 증액된 수준임.

(단위 : 천원, %)

	구	분	2018년도 당초예산	2019년도	증감액	증감률
	총	계	404,346	424,219	19,873	4.9%
일	소	계	404,346	424,219	19,873	4.9%
일반회	사	업 비	260,762	287,623	26,861	10.3%
계	행정	운영경비	143,584	136,596	△6,988	△4.9%

(단위 :백만원, %)

	정책/단위/ 세부사업별	2 0 예	1 8 산	2,019 예 산	당초예	산대비
	세구자급절	당 초	최종	11 12	증감	비율
	합 계	404	404	424	20	5.0
	사업예산(계)	260	260	287	27	10.4
시	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 보호 증진	260	260	287	27	10.4
	고충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	55	55	65	10	18.1
	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	44	44	47	3	6.8
	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	11	11	18	7	63.6
	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	111	111	111	0	0
	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	32	32	32	0	0
	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	79	79	79	0	0
	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	94	94	111	17	18.1

정책/단위/ 세부사업별		0	1 8 산	2019 예 산	당초예산대비	
		초	최종	ના સ	증감	비율
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		94	94	111	17	18.1
행정운영경비(계)		144	144	137	△7	△4.9
기본경비		144	144	137	△7	△4.9

○ 2019년도 정책·단위·세부사업별 2018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

(단위: 천원, %)

		예산과목	2018년			
정 책		세 면성목-통계목	당초예산	2019 예산(안)	증감액	증감률
합계			404,346	424,219	19,873	4.9
시민	참여	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	260,762	287,623	26,861	10.3
	고충	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	55,244	64,744	9,500	17.2
	-	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	44,100	46,600	2,500	5.7
		사무관리비	23,100	25,600	2,500	10.8
		시책추진 업무추진비	21,000	21,000	_	_
		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	11,144	18,144	7,000	62.8
		사무관리비	1,144	1,144	_	_
		포상금	10,000	17,000	7,000	70.0
	시민	!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	111,100	111,100	_	_
		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	32,100	32,100	_	_
		사무관리비	16,100	16,100	-	-
		시책추진 업무추진비	16,000	16,000	_	_
		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	79,000	79,000	_	_
		사무관리비	67,000	67,000	_	_
		시책추진 업무추진비	12,000	12,000	_	_
	시민	감시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	94,418	111,779	17,361	18.4
		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	94,418	111,779	17,361	18.4
		기간제근로자보수	6,658	6,859	201	3.0
		사무관리비	44,200	48,000	3,800	8.6
		국외업무여비	10,000	25,000	15,000	150
		특정업무경비	30,960	31,920	960	3.1
		기타보상금	2,600	-	△2,600	△100
행경	정운영	[경비 -	143,584	136,596	△6,988	△4.9
		기본경비	143,584	136,596	△6,988	△4.9
		사무관리비	89,472	90,936	1,464	1.6
		국내여비	48,832	40,320	△8,512	△17.4
		부서운영업무추진비	5,280	5,340	60	1.1

Ⅱ. 검토의견

1. 세출예산 검토

○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"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"(4천7백만원), "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"(1천8백만원), '시민감사 및 주민 감사 활동지원'(3천2백만원), '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' (7천9백만원), '시민감사옴부 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'(1억1천1백만원) 등 총 6개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8천7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3천7백만원 등으로 전년(4억4백만원) 대비 4.9% 증액한 4억2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.

가.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·처리

○ 고충민원 직접조사 및 처리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(4천4백만원) 대비 5.6%(250만원) 감액한 4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.

〈편성예산〉

	2018년		2019예산(안)		
구 분	본예산	최종예산 (A)	(B)	증감 (B-A)	(B-A)*100/ A
계	(x-)	(x-)	(x-)	(x-)	(x-)
	44,100	44,100	46,600	2,500	5.6
사무관리비	(x-)	(x-)	(x-)	(x-)	(x-)
	23,100	23,100	25,600	2,500	10.8
시책추진	(x-)	(x-)	(x-)	(x-)	(x-)
업무추진비	21,000	21,000	21,000	0	0

과목구분	2018년 본예산	2019년 예산(안)			
	○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= 2,500천원	○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= 5,000천원			
	- 강사료 350,000원*2명*1회 = 700천원	- 강사료 350,000원*2명*2회 = 1,400천원			
	- 교재비 6,000원*300부*1회 = 1,800천원	- 교재비 6,000원*300부*2회 = 3,600천원			
	○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= 3,000천원	○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= 3,000천원			
	- 회의참석수당 150,000원*1명*12회 = 1,800천원	- 회의참석수당 150,000원*1명*12회 = 1,800천원			
사무관리비	- 자료검토수당 100,000원*1명*12회 = 1,200천원	- 자료검토수당 100,000원*1명*12회 = 1,200천원			
가구선되미	○ 민원조정·중재제도 운영 = 17,600천원	○ 민원배심법정 운영 = 17,600천원			
	- 외부배심원 회의참석수당 150,000원*4명*16회 = 9,600천원	- 회의참석수당 150,000원*4명*16회 = 9,600천원			
	- 외부배심원 자료검토수당 100,000원*4명*16회 = 6,400천원	- 자료검토수당 100,000원*4명*16회 = 6,400천원			
	- 주배심수당 100,000원*1명*16회 = 1,600천원	- 대표배심원 수당 100,000원*1명*16회 = 1,600천원			
	증감사유				
	-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고충민원	역량강화 교육 확대 (연 1회 → 연 2회)			
	○ 고충민원 조사활동 업무추진 = 14,000천원	○ 고충민원 조사활동 업무추진 = 14,000천원			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민원조정·중재제도 운영 = 7,000천원	○ 민원배심법정 운영 = 7,000천원			
	증감	사유			
	- 해당사항 없음				

- 사무관리비의 세부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,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"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" 확대(1회→2회)로 인한 교육비는 증액 (250만원→500만원)한 것이나, 동 교육의 2017년 집행률은 74.0%이고, 2018년 10월 말 기준, 동 예산의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임.
- 고충민원의 신속·공정한 처리 등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는 절실히 필요하나,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연말에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바,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회는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민원배심법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시민 홍보 및 의제 발굴 등 시민 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〈 민원배심법정 접수 내역 및 개최 내역 〉

- 민원배심법정 접수 내역	(2018.	9월	현재,	단위:	건)
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	-----	-----	----

연도별	계	2018	2017	2016
접수 안건수	29	9	12	8
회의개최 횟수	54	15	24	15

- 민원배심법정 개최 내역

(단위: 건, '18.9월말)

연도별	총 안건수	인 용	일부인용	조정·중재	기각
계	29	11	7	3	8
2018	9	3	2	1	3
2017	12	6	1	1	4
2016	8	2	4	1	1

자료: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,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, 1273페이지

○ 또한, 동 사업의 '사무관리비' 중 "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" 항목은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현장 중심 민원 서비스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나,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, 2016년, 2017년에는 집행실적이 전무하였으며, 2018년도에는 9월 말 기준 10%(30만원)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.

- 현장 중심 민원 해소를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, 2019년에도 2018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는바, 적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.

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〉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	예산액		집행내역	비고
CTE	계	산출기초		8941	0175
		-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	2,500	0	
2018	23,100	-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	3,000	300	
	'	- 민원조정 중재제도 운영	17,600	12,513	
	24,164	-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	5,000	3,703	
2017		-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	6,064	0	
	'	- 민원조정 중재제도 운영	13,100	13,497	
		-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	5,064	3,778	
2016	19,664	-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	6,600	0	
	'	- 고충민원 및 시민·주민감사 직무 워크숍	8,000	7,725	

나.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

○ 본 사업은 시민불편사항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시정을 위해 시민 및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시민 및 직원표창을 위한 '사무관리비'(114만원)와 우수기관 및 자치구 '포상금'(1천7백만원)으로, 1천8백만원의 예산(전년예산 1천1백만원 대비 62.8%)을 편성하고 있음.

〈편성예산〉

	201	2018년			
구 분	본예산	최종예산 (A)	2019예산(안) (B)	증감(B-A)	(B-A)*100/ A
계	11,144	11,144	18,144	7,000	62.8
사무관리비	1,144	1,144	1,144	0	0
포상금	10,000	10,000	17,000	7,000	70.0

과목구분	2018년 본예산	2019년 예산(안)			
	○ 표창장 제작 구매 5,500원*117조 = 644천원	○ 표창장 제작 구매 5,500원*117조 = 644천원			
사무관리비	○ 현장점검 물품구입 100,000원*5점 = 500천원	○ 현장점검 물품구입 100,000원*5점 = 500천원			
	증감	사유			
	- 해당사항 없음				
	 ○ 우수기관 및 자치구 포상 = 10,000천원 - 우수기관 포상 1,000,000원*3개 기관 = 3,000천원 	○ 우수기관 및 자치구 포상 = 17,000천원 - 우수기관 포상 1,000,000원*3개 기관 = 3,000천원			
포상금	- 우수자치구 포상 1,000,000원*7개 자치구 = 7,000천원	- 우수자치구 포상 2,000,000원*7개 자치구 = 14,000천원			
	증감	사유			
	- 우수 자치구 대상 포상금 100만원 → 200만원으로 확대				

○ 동 사업의 '사무관리비' 중 현장점검을 위한 물품구입비는 매년 50만원 (100,000원*5점)을 편성하고 있으나, 2018년에는 9월 말 기준 전액 미집행하였으며, 2017년에는 현장점검 물품으로 안전화 18만원을 구입하고 나머지(32만원)는 다과비 등에 사용하였음.

연도	예산액(천원)	집행액	집행계획 또는 집행내역	비고
2017년	803 -표창장 303 -현장점검물품 500	803	 · 현장민원 점검관련 물품(안전화) 180 ·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위원회 다과 74 · 표창장 제작 구매 549 	

- 또한, 동 사업의 '포상금'은 시민불편사항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시정을 위해 우수시민 및 직원을 포상하려는 것으로, 전년 예산(1천만원) 대비 70% 증액한 1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.
-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'포상금'은 「2018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르면 포상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, 동 사업에서 '포상금' 예산이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 등의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「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

편 성 목	설 정 (통계목 포함)
303 포상금	01. 포상금
	1. 모범공무원 <u>산업시찰</u> 가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.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
	2.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
	3.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
	4.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
	5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
	(단,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)

○ 한편, 서울시에서 자치구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민원배심법정 상정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 길들이기식 사업이 아닌 법적인 권한과 근거가 우선되어야 하는바,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〈 최근 4년간 응답소 현장민원 관련 포상금 지급내역 〉

연도	구분	기관명	포상금
2017	시·사업소 우수부서	'17.11월 평가 완료 후 시,사업소 우수부서 3개 선정(예정)	3백만원 (각 1백만원)
	우수 자치구	'17.11월 평가 완료 후 우수 자치구 7개 선정	7백만원 (각 1백만원)
0010	시·산업소 우수부서	대기관리과, 서부수도사업소, 동부도로사업소	3백만원 (각 1백만원)
2016	우수 자치구	은평구, 강북구, 양천구	3백만원 (각 1백만원)
	최우수	대기관리과	2백만원
2015년	우 수	서부수도사업소, 동부도로사업소, 시민봉사담당관, 보도환경개선과	4백만원 (각 1백만원)
	최우수	친환경교통과	2백만원
2014년	우 수	보도환경개선과, 서부수도사업소, 대기환경연구부, 도로관리과	4백만원 (각 1백만원)

-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에 따르면, 사무관리비를 행정경비의 일종으로, 사업수행부서의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분류하고 있음.
- 본 통계목이 경상적·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, '사무관리비'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실소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, 관행적,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서울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는 시민감사음부즈만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'사무관리비' 편성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다.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

○ 본 사업은 감사·조사 활동에 외부전문가, 시민 등의 참여로 감사의 공정성·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심의회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.

〈편성예산〉

(단위 : 천원)

	2018년		2019예산(안)		
구 분	본예산	최종예산 (A)	(B)	증감 (B-A)	(B-A)*100/ A
계	(x-)	(x-)	(x-)	(x-)	(x-)
711	32,100	32,100	32,100	0	0
사무관리비	(x-)	(x-)	(x-)	(x-)	(x-)
시구산디미	16,100	16,100	16,100	0	0
시책추진	(x-)	(x-)	(x-)	(x-)	(x-)
업무추진비	16,000	16,000	16,000	0	0

○ 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 감사 청구 시, 청구 요건 심사 및 청구인 명부의 유효 서명 등의 확인을 수행하는 위원회로, 회의 운영실적과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.

□ 사업내용

- 감사청구심의회 운영
 - 구성인원 : 11명(외부 9명, 내부 2명), 임기 2년(1차 연임 가능)
 - 기능
 - ·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
 - ·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에 적힌 유효서명 확인
 - ·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등

〈**감사청구심의회 예산 집행 실적**〉 (단위: 천원, '18.9월말)

연도	예산과목	예산편성내역		집행내역	비고
2018	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,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,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,		11,100	3,250	
2017	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	감사청구심의회 운영	7,500	7,900	
2016	감사위원회 민원해소담당관,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, 적극적 민원처리 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, 시민감사옴부 즈만 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		6,000	7,500	

〈감사청구심의회 운영〉

연도			회의 운영 내역		
[건도	회차	회의일시	회의안건	참석자	처리결과
	1	3. 23.	○ 2016·2017년 강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	위원장 외 6	수리
	2	6. 7.	○ 송파구 석촌시장 LED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	위원장 외 7	수리
2018		0. 7.	○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입찰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	위원장 외 7	각하
	0	0 14	○ 동작구 동작대로 문화거리조성사업 관련 주 민감사 청구의 건	김선중 위원장 외 7	각하
	3	9. 14.	○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 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	김선중 위원장 외 7	수리
	1	1. 18.	○ 마포구 '아현포차'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한 주 민감사 청구의 건	정재실 부위원장 외 6	수리
	2	4. 8.	○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및 공무원 횡포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	위원장 외 6	수리
	3	4. 27.	○ 동작구 이수역 주변 노점상 강제철거과정 위 법 부당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	김선중 위원장 외 6	수리
2017	4	4. 27.	2016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 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외유성 성격과 표절문 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	김선중 위원장 외 7	수리
		4. 27.	○ 강동구 길동 우성2차아파트 주차장 입구 불법 영업 노점상의 지속적인 민원과 진정에 대한 강동구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	ノバイテ	각하
	5	11. 8.	2016년 상반기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 과보고서의 외유성 성격과 표절문제에 대한 주 민감사 청구의 건	ノバテ	수리
	6	12. 6.	관악구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 차 등지원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	김선중 위원장 외 6	수리
	1	3. 3.	○ 강동구 고덕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 업조합 임시총회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	임종빈 부위원장 외 5	결정보류
	2	4. 27.	○ 강동구 고덕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 업조합 임시총회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	위원장 외 7	각하
	4	1. 21.	○ 관악구의회 해외비교시찰 예산집행 관련 주 민감사 청구의 건	위원장 외 7	수리
2016	3	6. 28.	○ 노원구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관련 용도변경허가 등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	위원장 외 6	각하
2010	4	10. 7.	○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관리감 독 소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	김선중 위원장 외 6	수리

연도			회의 운영 내역		
간도	회차	회의일시	회의안건	참석자	처리결과
			○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사무에	김선중	수리
			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	위원장 외 6	1 4
			○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	김선중	
			독 및 민원해결 적법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	위원장 외 5	심의 연기
			인명부 서명 이의신청의 건	71 27 7 0	
	5	10. 28.	○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	김선중	심의 연기
			및 민원해결 적법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	위원장 외 5	다기 간기
			○ 용산구 서빙고동 4-16일대 신축 관련 위법 부당성	김선중	수리
			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	위원장 외 5	14
			○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	김선중	
			독 및 민원해결 적법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	원전 3 위원장 외 5	이유없음
	6	11. 17.	인명부 서명 이의신청의 건	게건상 기 3	
			○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	김선중	수리
			및 민원해결 적법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	위원장 외 5	T 4

○ 동 사업의 '시책업무추진비'는 전체 사업비(3천2백만원) 대비 50%(1천6백 만원)에 가까운바 '시책업무추진비' 편성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마.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

○ 본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, 용역, 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 여부를 감시·평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7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.

〈편성예산〉

		2018년		2019예산(안)		
구 분		본예산	최종예산 (A)	(B)	증감(B-A)	(B-A)*100/ A
계		(x-) 79,000	(x-) 79,000	(x-) 79,000	(x-) 0	(x-) 0
사무관리비		(x-) 67,000	(x-) 67,000	(x-) 67,000	(x-) 0	(x-) 0
시책추진업! 추진비	2	(x-) 12,000	(x-) 12,000	(x-) 12,000	(x-) 0	(x-) 0

과목구분	2018년 본예산	2019년 예산(안)			
	○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150,000원*35명*8회 = 42,000천원	○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150,000원*35명*8회 = 42,000천원			
사무관리비	○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150,000원*35명*4회 = 21,000천원	○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150,000원*35명*4회 = 21,000천원			
	○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2,000,000원*2회 = 4,000천원	○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2,000,000원*2회 = 4,000천원			
	증감사유				
	- 해당사항 없음				
	○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= 12,000천원	○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= 12,000천원			
시책추진업무추진비	증감	사유			
	- 해당사항 없음				

- 동 사업은 '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'와 '5억원 이상의 용역 및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' 시에 시민감사음부즈만이 입회하여 청렴계약 이행 여부를 감시·평가하는 사업으로, '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(4천2백만원),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(4회, 2천1백만원), 시민감사·참여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(2회, 4백만원)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 - ※ 현재 시민참여옴부즈만은 33명이나, 35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.

□ 사업내용

- 추진인력
 -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
 -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 구성(위촉직)
 - · 전문분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복지, 도시안전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

- 대상기관
 - 시본청, 사업소, 투자출연기관, 자치구(시의 위임사무), 사무위탁기관(위탁사무) 및 보조금 수렁기관
- 대상사업
 -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
 -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
 - 그밖에 감시·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
- 활동내용
 -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·평가 활동 및 부조리 사항 발견 시 감사 추진
 - 시정참여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, 정책제언 등 자문역할
 - 시민감사·참여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: 연 2회
- 4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.
 -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참여실적이 전무한 옴부즈만(3명)과 참여 실적이 저조한 옴부즈만이 있는 등 위원마다 참여 실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,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남성, 고연령으로 편중 운영되는 등 미비점이 나타났는바,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충실한 사업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〈 최근 4년간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집행내역〉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예산액	집행액(집행률)	비고(건수)
2018 (10월말)	42,000	29,400(70%)	196건
2017	42,000	37,200(88.5%)	248건
2016	42,000	25,600(60.9%)	171건
2015	24,150	17,400(72.0%)	116건

○ 동 사업의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(4회)와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(2회)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나,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'2년으로 연임'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신규 옴부즈만 위촉 등에 따라 사업 예산의 증감이 필요하나,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성실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〈 최근 3년간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집행내역〉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예산액	집행액(집행률)	비고
2019년 편성액	21,000	ı	
2018 (9월말)	21,000	11,700(44.2%)	
2017	21,000	6,209(70.4%)	

바.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

○ 본 사업은 출범 3주년을 맞이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옴부즈만과 조사관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, '사무관리비'(4천8백만원), '국외업무여비'(2천5백만원), '특정업무경비'(3천1백만원) 등 전년(9천4백만원) 대비 18.3% 증액한 1억 1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.

〈편성예산〉

	201	8년	2019예산(안)		
구 분	본예산	최종예산 (A)	(B)	증감 (B-A)	(B-A)*100/ A
계	94,418	94,418	111,779	17,361	18.3
기간제근로자 등보수	6,658	6,658	6,859	201	3
사무관리비	44,200	44,200	48,000	3,800	8
국외업무여비	10,000	10,000	25,000	15,000	150
특정업무경비	30,960	30,960	31,920	960	3
기타보상금	2,600	2,600	0	△2,600	△100

(세부 산술 기조)								
과목구분	2018년 본예산	2019년 예산(안)						
기간제근로자등보수	○ 초단시간근로자보수 = 6,658천원 - 인부임 8,613원*14시간*4주*1명*12월 = 5,788천원	○ 초단시간근로자보수 = 6,859천원 - 인부임 8,900원*14시간*4주*1명*12월 = 5,981천원						
	- 교통비 60,000원*12개월 = 720천원 - 보험료	- 교통비 60,000원*12개월 = 720천원 - 보험료						
	6,508,000원*2.3% = 150천원	6,701,000원*2.35% = 158천원						
	증감사유							
	- 인건비 단가 상승분 반영 (시간당 8,613원 → 8,900원)							
사무관리비	○ 고충민원 및 시민·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4,000,000원*2회 = 8,000천원	○ 고충민원 및 시민·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4,000,000원*2회 = 8,000천원						
	○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홍보 = 31,200천원	○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정보 제공 = 40,000천원						
	- UCC 동영상 시민공모심사수당 등 1,200,000원*1식 = 1,200천원	- 홍보물 제작 2,000원*10,000매 = 20,000천원						
	- 홍보물 제작·부착 2,000원*5,000매 = 10,000천원	-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림 10,000,000*1식 = 10,000천원						
	- 시민권익구제 사례집 발간 20,000원*1,000부 = 20,000천원	- 시민감사옴부즈만 대시민 정보 제공 10,000,000*1식 = 10,000천원						
	○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성과 토론회 개최 5,000,000원*1식 = 5,000천원	10,000 E E						
	증감사유							
	-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,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증액 (8,800천원)							
국외업무여비	○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·견학	○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·견학						

과목구분	2018년 본예산	2019년 예산(안)			
	5,000,000원*2명 = 10,000천원	5,000,000원*5명 = 25,000천원			
	증감사유 -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증액(2명→5명)				

- 주요 증액 내용은 "납세자보호관* 제도 홍보 및 홍보물 제작" 등을 위해 '사무관리비' 880만원, "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의 원활한 추진"(2명 ⇒ 5명)을 위해 '국외업무여비' 1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음.
- ※ 「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 동 회기에 제출되어(2018.10.17.) 있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(2018.10.29)되어 있음.
- 시민감사옴부즈만(7명) 중 내년에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옴부즈만을 신규로 채용하게 됨에 따라 신임 옴부즈만이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등을 시찰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보임.

〈2019년 임기 만료 예정인 시민감사음부즈만 현황〉

직위	성명	임용기간		
위원장	정기창	2016.2.23. ~ 2019.2.22.		
위원	김경희	2016.2.23. ~ 2019.2.22.		
위원	박진영	2016.5.24. ~ 2019.5.23.		
위원	장정욱	2016.7.1. ~ 2019.6.30.		
위원	김선주	2016.8.9. ~ 2019.8.8.		
위원	조웅길	2016.8.23. ~ 2019.8.22.		

-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감사옴즈만을 공무원으로 채용시 관련 법령(「지방공무원법」,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,「서울시 인사규칙」)을 준수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해야할 것이며, 동 사업 중 신임 옴부즈만 채용에 따른 '국외업무여비'의 150% 증액 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〈 해외 옴부즈만 우수사례 교류 및 견학〉

(단위: 천원, '18.10월 현재)

연도별	여행국	기간	출장자	예산액	집행액	비고
2018	미국, 캐나다	'18.10.13.(토) ~10.20.(토)	박진영, 장정욱	10,000 (2명*5,000)	7,900	
2017	노르웨이, 스웨덴, 덴마크	'17.09.09.(토) ~09.16.(토)	김경희, 정진우	10,000 (2명*5,000)	8,177	
2016	호주, 뉴질랜드	'16.11.01.(화) ~11.08.(화)	윤천원, 서승표	10,000 (2명*5,000)	5,326	

의사지원팀장 : 박희숙 입법조사관 : 신정희